

산업기술연구소 규정

- 제정 : 1989. 3. 10. 개정 : 1999. 3. 1.
- 개정 : 1993. 3. 1. 개정 : 2000. 3. 1.
- 개정 : 1996. 3. 10. 개정 : 2011. 6. 30.
- 개정 : 1997. 3. 3. 개정 : 2015. 5. 13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 학칙 제52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62조 1항에 의거 부설 산업기술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본 연구소는 수원과학대학교 부속 산업기술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 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3조(위치) 연구소는 수원과학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내에 둔다.

제4조(사업)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

1. 산업체에 필요한 기술의 이론과 응용에 관한 연구
2. 외부위탁 과제에 대한 조사용역 및 연구용역
3.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
4. 삭제
5. 기타 연구소의 연구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
제5조(임원) 연구소 내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연구소장 1명
2. 연구부장 5명
 - 가. 제1연구부(기계, 자동차, 신소재응용 분야)
 - 나. 제2연구부(컴퓨터정보, 전기, 전자, 정보통신 분야)
 - 다. 제3연구부(건축, 건축설비소방, 실내건축디자인, 건설시스템, 환경보건 분야)
 - 라. 제4연구부(공연연기, 치위생, 간호, 산업디자인, 음악, 생활체육, 뷰티코디네이션 분야)
 - 마. 제5연구부(교양, 산업경영, 증권금융, 사회복지, 항공관광, 호텔조리·제빵, 관광영어, 비서 행정, 세무회계정보, 관광중국어, 아동보육, 국제경영, 관광일어 분야)에 연구부장 각 1명

제6조(연구소장) ① 연구소장은 본교의 조교수 이상의 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연구소장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, 연구소를 대표한다.

제7조(연구부장) ① 연구부장은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.

7-2-2 산업기술연구소 규정

- ② 연구부장은 각 연구부의 분야별로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등 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.
- ③ 연구부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8조(간사) ① 간사는 교원 또는 일반직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.

- ② 간사는 연구소의 제반 사무를 담당한다.
- ③ 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9조(운영위원회의 구성) ① 연구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산업기술연구소 운영위원회(이하 '운영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.
 1. 연구소장
 2. 각 연구부장
 3. 간사
- ③ 운영위원회는 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10조(운영위원회의 위원장) 운영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'위원장'이라 한다)은 연구소장으로 한다.

제11조(운영위원회의 업무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·의결한다.

1. 연구소의 운영방침
2. 연구소의 사업계획 수립
3. 위촉되는 연구내용의 검토 및 지원
4. 연구원의 선정 및 인준
5. 산업체인사 또는 다른 연구기관의 인사와 공동연구 시 그 특별연구원의 선정
6. 규정의 제정 및 폐기
7. 결산
8.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12조(회의)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.

- ②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운영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운영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운영위원 회의결과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3조(연구진행) ① 연구소장은 연구원의 연구진행 상태를 수시로 파악한다.

② 연구원은 연구계획서에 의거 연구를 수행하며, 연구수행에 대한 제반 책임을 부담한다.

제14조(연구과제의 변경) 책임연구원은 연구수행 중 위탁자의 요구 또는 해당 연구실의 사정에 따라 연구내용 및 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연구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5조(보고서의 제출) 책임연구원은 연구기간동안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, 그 중 2부는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6조(연구비의 일부 집행) 삭제

제17조(재정) 연구소의 재정은 본교 연구비, 외부 연구비, 찬조금, 산학협동지원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.

제18조(사업년도) 연구소의 사업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 까지로 한다.

제19조(결산) 연구소의 연구소장은 매 사업년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당해년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20조(운영세칙) 본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조 내지 제3조의 규정은 1990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7-2-2 산업기술연구소 규정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7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6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이 규정 상의 '수원전문대학'은 1998년 6월 24일부로 '수원과학대학'으로 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